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2-10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8구합54426 기타(지방세)

원 고 A 주식회사

[redacted]

피 고 [redacted]광역시 [redacted]구청장

변 론 종 결 2019. 5. 2.

판 결 선 고 2019. 5.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8. 6. 원고에게 한 취득세 71,837,600원(가산세 포함), 지방교육세 9,157,30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1,526,2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2-10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6. 20.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이하 '대도시'라 한다) 내인 [redacted]구 B를 본점 소재지(이후 [redacted]구 C으로 본점 소재지가 변경되었다)로 하여 전자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14. 6. 5.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확인을 받았고, 2015. 9. 30. 대도시 내에 있는 [redacted]구 C 공장용지 1,090.5㎡ 및 그 지상 3층 공장건물 2,036.79㎡(이하 토지 및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의경매절차에서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이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 제1항 제16호의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인 도시형 공장을 경영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된 것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표준세율(40/1,000)을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세 83,848,020원을 신고하는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이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창업일부터 4년 이내의 사업용 재산 취득으로서 취득세 감면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이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0조 제3항 본문에 규정된 취득세 면제사유인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83,848,020원과 농어촌특별세 16,769,600원을 면제하였다(지방교육세는 취득세의 면제에 따라 그 세액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2-10

0원이 되었다).

다. 원고는 2017. 4. 24. 주식회사 D에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 1층 부분 678.93㎡를 임대차기간 2017. 5. 31.부터 2019. 5.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 1층 부분을 임대함으로써 ① 위 건물 1층 부분 및 그 부속 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임대부분'이라 한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단서의 취득세 면제액 추징사유에 해당하게 되고, ② 대도시 내에서 법인 설립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한 이 사건 임대부분을 그 취득일부터 2년 이상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인 도시형 공장을 경영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아 구 지방세법(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3항 제2호 및 제13조 제2항 본문 제1호의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2018. 8. 6.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임대부분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가산세 포함), 지방교육세(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가산세 포함)를 부과 ·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단위: 원)

세목	세액	가산세액		합계
		일반무신고	납부불성실	
취득세	53,944,290	10,788,850	7,104,460	71,837,600
지방교육세	8,091,640		1,065,660	9,157,300
농어촌특별세	1,348,600		177,610	1,526,210
합계	63,384,530	10,788,850	8,347,730	82,521,110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 6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2-10

가. 원고의 주장

1) 중과세율 적용의 위법

구 조세제한특례법 제12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임대부분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액을 추징하는 경우에 그 추징액은 면제된 세액을 한도로 하는 것인데,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임대부분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함으로써 구 조세제한특례법 제120조 제3항 본문에 따라 면제된 세액을 초과하는 세액을 부과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구 조세제한특례법 제120조 제3항 본문에 따라 면제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2) 신뢰보호의 원칙 위배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을 신청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 1층 부분을 임대할 것이라는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는데, 피고는 그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알게 되었으면서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 주면서 그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같이 2년 이내에 임대가 이루어지면 취득세 면제액 등이 추징될 것이라는 점을 알려주지도 않음으로써 이 사건 임대부분이 2년 이내에 임대되더라도 취득세 면제액 등이 추징되지 않을 것이라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고, 원고는 아무런 과실 없이 피고의 그와 같은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이 사건 임대부분을 임대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이 사건 처분이 피고의 부주의로 인한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주장은 신뢰보호의 원칙 위배 주장과 관련된 주장으로 본다).

3) 가산세 부과의 위법

원고는 법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한 바가 없고, 설령 원고의 의무위반이 있다고 하더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2-10

라도 그 의무위반의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중과세율 적용의 적법 여부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3조 제3항, 제13조 제8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등에 의하면,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 이후 5년 이내에 대도시 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사무소 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요건만 갖추면 그 용도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되지만(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두13511 판결 등 참조), 예외적으로 대도시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인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의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세율이 아닌 취득세 표준세율이 적용되고, 다만 그와 같이 예외적인 경우에도 그 부동산을 취득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업종 또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겸용하는 등의 경우에는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2015. 9. 30.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17. 4. 24. 주식회사 D에 이 사건 부동산 중 이 사건 임대부분을 임대하여 2017. 5. 31.부터 사용하게 한 것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단서에 따른 면제된 취득세의 추징사유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2-10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을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인 도시형 공장을 경영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고도 2년 이상 해당 업종 또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 중 이 사건 임대부분을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이어서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3항에 따른 경감된 취득세의 추징사유에도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이 사건 임대부분의 취득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본문에 따라 면제된 취득세 및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기 위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단서 및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본문 제1호에 따라 부과된 것이어서 적법하다.

2) 신뢰보호의 원칙 위배 여부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비과세 관행 존중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예외적인 법 원칙이다. 그러므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표명 등을 통하여 부여한 신뢰가 평균적인 납세자로 하여금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5940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 신청을 받으면서 장차 이 사건 임대부분을 임대하려고 하는 원고의 사업계획을 알게 되었으면서도 그 사업계획에 따른 임대와 관련하여 취득세 면제액 등이 추징될 수 있음을 알려주지 않은 채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부분의 임대가 취득세 면제액 등의 추징사유에 해당하는 경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2-10

우에도 그 추징을 위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거나 그와 같은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3) 가산세 부과의 적법 여부

구 지방세법 제20조 제3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1조 제1항은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과를 면할 수 있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두4089 판결 등 참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2-10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주식회사 D에 이 사건 부동산 중 이 사건 임대부분을 임대한 것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단서에 따른 면제된 취득세의 추징사유 및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3항에 따른 경감된 취득세의 추징사유에 해당하는 만큼, 원고로서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고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그 의무를 위반하였고, 원고가 그와 같은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에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성완

판사 오흥록

판사 박재성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2-10

관계법령

구 조세제한특례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등록면허세의 면제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1.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 등기[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4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③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2016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2. 2016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2-10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2014. 12. 31. 법률 제12955호)

제1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구 지방세법(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11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항 및 제28조 제2항에서 같다)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대도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본문을 적용한다.

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2-10

경우

나.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업종 또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겸용하는 경우

⑧ 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제151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취득물건(제15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제12조의 세율(제14조에 따라 조례로 세율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세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제11조 제1항 제8호의 경우에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가. 제13조 제2항·제3항·제6항 또는 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 이 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지방교육세액의 100분의 300

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감면조례(이하 "지방세감면법령"이라 한다)에서 취득세를 감면하는 경우

1) 지방세감면법령에서 취득세의 감면율을 정하는 경우: 이 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2-10

법으로 산출한 지방교육세액을 해당 취득세 감면율로 감면하고 남은 금액

제153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제152조 제1항에 따라 지방교육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제152조 제1항에 따라 지방교육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51조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5조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① 법 제1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1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을 경영하는 사업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항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설치·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은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2-10

호별	과세표준	세율
1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을 받는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세액(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100분의 20
2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받은 이자소득·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세액	100분의 10
3	삭제 <2010.12.30>	
4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개별소비세액	
	가.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3항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
	나. 가목 외의 경우	100분의 10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증권의 양도가액	1만분의 15
6	「지방세법」 제11조 및 제12조의 표준세율을 100분의 2로 적용하여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액	100분의 10
7	「지방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레저세액	100분의 20
8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액	100분의 20

제8조(부과・징수)

② 제7조에 따라 농어촌특별세의 신고・납부 및 원천징수 등을 하여야 할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3. 제3조제1호의 납세의무자 중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을 받는 자와 제3조 제5호에 따른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이 해당 본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한다.